

기부문화 확산

세계적 추세로써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현대사회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가 감당하기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한바 있다.

전반한 민주사회로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들에서는 복지, 환경, 인권, 지역 사회발전 등 많은 정책분야를 위한 활동부서의 입은 제3영역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루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느려진 사회발전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다른점이 있다면 다른나라에서는 국가운영의 리드인인 시민사회를 시민운동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관행으로 창출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오히려 여러면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중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기부문화에 관한 주제는 다른나라에서 우리들한테서 찾아볼 수 있다.

기부문화의 400조의 액수를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9000개에 가까운 모금을 받았다는 기부자의 액수는 모금액은 40조 원이며 기부금 지원금으로 국가의 재정강화로 쓰이고 있는 미국의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공익재단의 기부자수는 310만 4000명이고(2000년)이다. 이들 기부금의 75%는 그 나라 국민의 75% 이상의 참여를 이루어지고 있다. 소액이지만 다수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득을 나누어주는 생활화된 기부문화의 산물이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영국의 후배 불레어 부임으로 "더 주는 시대 - Giving more age"를 선포하였는데 미국에서는 또다시 이단 시대를 풍미한 "5% rule - Give-five rule"을 전개하였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기부문화의 확산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 시민사회에서는 <민간단체 지원법>과 함께 <기부금품 모금법>을 두어 국민들의 나눔의 문화를 촉진하고 있어서 시민사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는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 모금금지법>이 1995년 <기부금품 모금 규제법>으로 개칭되어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부문화 확산에 반목을 겪고 있다. 그 결과로 국민의 후진으로 활동해야 하는 민간활동의 발전에 의해 문인이 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기법법을 전부 밖에 없게 만들고 있게 되었다.

사실상의 증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노력으로 기부금품 모금규제법의 문제 대응개방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비례정책이며 비합리적인 규제법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다국적 정부가 "소액허가제"나 "모금비율" 등의 문제에서 현상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입법이 이러한 경우 의무입법을 추진하는 한편서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병행이다.

다행인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예외, 복지, 환경, 인권 등 부문별 공익 활동을 위한 민간재단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운동체제인 기부문화의 정책적인 연계를 제도적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생명인 "자발성"을 보충하게 하는 중립적 구조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하기 크다. 이들의 발전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서도 재단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개입의 필요성이 강해진다. 헌법제도가 "헌" 시대에 반증적인 사례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기부문화의 세로로 된다는 기부의 사회적 합종이다. 미국의 경우 기부기부가 전체 기부액의 20%에 불과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80%가 기부기부라는 데서 기부의 사회적 합의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이제는 사회공헌이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자선행위나 봉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는 문제점을 갖는다. 사회공헌의 의미를 넓혀 운영하거나 사회공헌의 공동행위로 운영하는 경우 기업에게 행위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공헌단체의 활동이나 무관심 또는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에서는 기업체들이 봉양기부나 민간채관 등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사회공헌의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혁과 활동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회공헌, 자원, 기업, 인력 등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는 물론 사회공헌을 위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9.29 (2)

10.5
Final

기부문화 확산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현대사회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전한 민주사회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복지, 환경, 인권, 지역사회발전 등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부문의 일을 제3영역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루어내고 있다. 차이점은 다른 나라들에서 국가운영의 파트너인 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와 관행을 창출해서 연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오히려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기부문화에 있어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새천년을 앞두고 “더 주는 시대(Giving More Age)”를 선포한 영국에서는 9000여개의 모금전담기구들이 연간 40조원을 모금하고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가 건국정신이어서 돈만이 아닌 시간을 포함한 “5% 주기(Give Five)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공익재단의 기본자산은 310조 4000억 원(2000년도)이다. 이들 기부금의 75%는 그 나라 국민의 80% 이상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액이지만 다수가 지속적으로 자기의 소득을 나누어주는, 생활화된 기부문화의 산물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사회에서는 <민간단체 지원법>과 <기부금품 모집법>을 제정하여 시민사회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1995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으로 명칭만 바뀐 채 현재까지 기부문화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의 후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민간 활동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범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기까지 한다.

새천년에 들어서면서 시민단체들의 공동노력으로 규제법의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측도 가담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규제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법 개정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외면하고 있어서 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입법이 부진할 경우 의원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서라도 제도개혁은 서둘러야 한다.

늦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여성, 복지, 환경, 아동 등 부문별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재단들이 출범했다. 이들 재단들은 시민운동체와 기부자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간기구로서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훼손될 수도 있는, 시민사회의 생명인 “자율성”을 보존하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서 의미가 크다. 재단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재단운영과 관련된 제반 세제 개혁이다. 화폐를 “환”으로 사용하던 시대에 제정된 세제들이 현재 재단들의 활동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대두한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새로운 화두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기업기부가 전체 기부액의 2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기부율이 높은데서 기업의 사회공헌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기업들이 이제는 사회공헌이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시민

단체화의 적극적인 제휴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을 직접 전개하는 경우 이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 전략하기 쉬우며 개별 시민운동체와 제휴하는 경우 시민단체들의 본연의 운동정신을 약화시킬까 우려된다. 선진국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팀들이 중간기구인 지역사회재단이나 공익재단들을 통해서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

국가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포용해야 한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혁과 활동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시민사회, 정부, 기업, 언론 등의 새로운 역할의 모색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문제는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다.